

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8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당항포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,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운영시간, 이용료, 이용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6조)

다. 이용제한,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

다. 합 의

1)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: 예산합의 완료

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371(2023. 9. 4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74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8. 25. ~ 2023. 9. 14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당항포관광지 내 당항포랜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목적, 명칭 및 위치(안 제1조~제2조)

◦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“고성군 당항포랜드”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음.

- 운영시간(안 제3조)

◦ 당항포랜드 운영시간을 「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한 당항포관광지의 개장 및 휴장, 개방시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당항포관광지 전체 시설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이용료 및 이용료 환불, 이용료 처리(안 제4조~제6조)

◦ 안 제4조에는 놀이기구 8종에 대한 이용료를 별표 1로 유아, 소인, 대인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◦ 안 제5조에는 정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, 안 제6조에는 징수한 이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입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음.

- 이용제한(안 제7조)

◦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음.

- 위탁관리(안 제8조)

◦ 시설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당항포랜드 시설물 관련 참고사항

- 당항포랜드(공룡놀이동산) 최초 조성 시 당항포랜드가 설치한 시설물을 최초 사용일(2005. 6. 1.)부터 12년이 경과 시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하였음.
- 이후 사용허가 연장으로 기부채납 예정일을 2017. 6. 10.까지로 연장 하였으며, 그 이후 시설물 무상귀속 조항을 삭제하여 2017. 6. 10. ~ 2018. 6. 9. 연장 계약하고 2020. 6.10.까지로 두 차례 더 연장하였음.
- 이후, 2020. 9. 10. ~ 2021. 6. 30. 계약 연장하고 다시 2021.12.31.까지 연장 후 최종 계약 종료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시설물 철거를 계획 하였음.
-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 따라 2022. 6. 30.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한 후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23. 6. 30까지 사용허가하였음.
- 당항포랜드가 2023. 7. 1. 놀이기구와 가설건축물 전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2005년 당항포랜드와의 협약에 따른 사후 조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던 놀이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시설 명칭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시행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